

내 용	조사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- 이쑤시개(전분재질은 제외) 등 나무류, 동물의 뱃조각(고압멸균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연화(軟化)되어 위해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 - 이빨, 돌, 모래 등 토사류, 담배꽁초 - 식품등의 제조·가공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탄화물(「식품위생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함.) -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이물 등 	

이물보고 제외대상

내 용

머리카락(동물의 털을 포함한다), 비닐, 씨앗 등 풀씨류, 참치껍질·가시 또는 혈대(혈관), 종이류, 실 및 끈류(철끈은 제외한다), 원료로부터 기인되거나 제조과정 또는 유통중에 성분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여 침전·응고 또는 뭉쳐있는 형태의 이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때 등

*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이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92호, 2009. 7. 14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령,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* 시행규칙 인용조문은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전부개정령 입법예고안(보건복지기족부 공고 제2009-279호, '09. 4. 24~'09. 5. 15)을 기준으로 함

□ 주요내용

지정품목으로 추가(안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항)

가. 기타 식품판매업소 판매제품을 HACCP

(1) 냉장·냉동식품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

- 판매제품에 대한 HACCP 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 품목에 추가
- (2) 최종 식품판매 단계까지 HACCP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유통·판매식품의 안전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
- 나. 최초 신청 식품유형 식품에 대한 심의 제도 폐지(안 제4조제6항)
- (1) 최초로 지정신청을 하는 식품유형 식품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평가 전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, 실효성이 적고 민원인의 불편 초래
 - (2) 최초 신청 식품유형 식품에 대한 별도의 심의제도를 폐지함.
 - (3) 지정 평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확대되고,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.
- 다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서 등 제출기관 변경(안 제9조제1항, 제3항, 제4항, 제10조제1항,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
- (1) 「식품위생법시행령」,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 권한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관됨.
 - (2)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 신청서 및 지정변경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.
- 라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·평가 기관 변경(제13조제1항, 제2항,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)
- (1) 「식품위생법시행령」,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의 개정HACCP 적용업소 정기 조사·평가 권한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관됨.
 - (2)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·평가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도록 함.
- 마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신규교육을 지정 전(前) 사전교육으로 전환(제17조제3항)
- (1) 「식품위생법시행규칙」의 개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이 지정 후 교육에서 지정 전 사전교육으로 전환
 - (2)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신규 교육을 적용업소 지정신청 이전에 받도록 함으로써 HACCP에 대한 전문지식이 함양되어 지정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.

바. 식품제조·가공업체 선행요건관리 평가항목 조정 및 식품별 평가사항 삭제
(안 제5조 관련 별표 3)

- (1) 중소업체가 HACCP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선행요건 중 작업장의 바닥, 벽, 천장 등 개보수가 적용의 결림돌로 작용
- (2) 바닥, 벽, 천장, 출입문, 창문의 재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작업장을 원료처리실, 제조·가공실, 내포장실로 한정하고, 미적용업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일 등과 같이 흠이 있는

재질도 위생관리를 적절히 할 경우 개·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
- (3) HACCP 적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적용 확대가 기대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